

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

구로구 공원녹지분야 단속·시설관리 업무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년 2월 13일

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등급	인원	근무 기간 (근무시간)	근무장소	담당직무 내용
공원녹지분야 단속·시설관리	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	1명	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(1일 7시간, 월~금 주35시간)	구로리 어린이공원 (구로4동 139-82)	· 공원·녹지 내 각종 위반 행위 단속 및 계도, 과태료 부과, 단속보고서 작성 등 · 공원·녹지 시설 점검(시설물 고장 및 파손 등 이용불편사항) 및 순찰 · 기타 공원 관리 업무 등과 관련 하여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※ 선발인원은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, 최초 근무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

※ 1일 7시간 주5일 근무 원칙으로 하되,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

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 3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운영지침
-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
- 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3. 응시 자격요건

○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등 (기준일 : 공고일 전일기준 '24.2.12.)

임용분야	자 격 요 건
국 적	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응 시 연 령	18세 이상(공고일 전일기준 '24.2.12.)
지 역 · 성 별	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공 통 요 건	○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○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○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와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필수요건	○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(단속분야)이 있는 사람 ※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관 등에서 단속분야 직무 실무경력이 있는자
우대조건	1. 중국어 회화 가능자 2. 공고일 전일기준('24.2.12.)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. 주말, 휴일, 야간근무 가능자 (자의적 근무시간 조정 불가)

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
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

[응시결격사유]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바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-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- 1. 공공기관
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-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- 계약기간: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(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)
- 근무시간: 1일 7시간(주35시간, 월요일~금요일, 09:00~17:00)
- 근무장소 : 구로리 어린이공원 (구로4동 139-82)
 - ※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
- 보 수: 21,072천원 (12개월, 주35시간 근무 약정 기준) (예정)

구 분	근무시간	예상 연봉액
시간선택제 '마급'	· 주 35시간 (월~금, 주간)	· 21,894천원 (월 1,824,500원)

- ※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거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
- ※ 연봉 외 급여(기타 수당 등)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급
- ※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※ 휴일 및 심야시간 등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은 근무하는 부서의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2. 26.(월) ~ 2. 27. (화), 2일간
(09:00~18:00, 점심시간 제외 12:00~13:00)
- 접수방법 : **본인이 직접 방문접수(우편, 팩스, 인터넷, 퀵서비스, 택배 접수 불가)**
- 접수장소 : 구로구청 신관 6층 공원녹지과(서울시 가마산로245 ☎860-2396)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구로구청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구로구 수입인지(구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)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채용 일정

내 용	일 정	장 소
채용공고	2024. 2. 13.(화) ~ 2. 23.(금)	구로구 홈페이지 등 공고
응시원서 접수	2024. 2. 26.(월) ~ 2. 27.(화)	구로구청 6층 신관 공원녹지과
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	2024. 2. 29.(목)(예정)	구로구청 공원녹지과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
면접시험	2024. 3. 5.(화)(예정)	공원녹지과 지정장소
면접합격자 발표	2024. 3. 6.(수)(예정)	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
임용후보자 서류 등록	2024. 3. 7.(목) ~ 3. 8.(금)(예정)	구로구청 공원녹지과
최종합격자 임용 (인사위원회승인 및 신원조사, 결격사유가 없는 자)	2024. 3월 말 (※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확정)	
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,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(다만,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개별통보 및 구로구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(직무수행 계획서, 자격증, 경력사항 등)에 의거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

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심사방법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심층면접
 - 지원동기, 자기소개, 직무수행계획 등 1분 내외 발표 후 심층 질문·답변
-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을 위한 5개 항목을 평가
- 선정방법
 - 각 평정요소별 평가점수를 합산·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1인을 우선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하고 득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 1인 선정
 - ※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, 관련분야(현장경험) 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 채용

<심사항목>

- ①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
-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- ③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④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- ⑤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
다. 면접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구로구 홈페이지 공고

-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구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라. 합격자 등록 : 2024.3.7.(목) ~ 3.8.(금) 예정 (※추후 확정)

- 등록장소 : 구로구청 신관 공원녹지과(6층)
 - ※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
- 등록서류 :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

마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구로구 홈페이지 공고

-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임용기관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시행됨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 1부

- 응시수수료 : 구로구 수입증지 5,000원
 - ※ 수입증지 구입장소 : 구로구청 민원여관과 1층
 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② 이력서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③ 자기소개서 1부
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
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.(임용예정직위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자유롭게 기술)

⑤ 개인정보제공·이용동의서 1부.

⑥ 주민등록 초본(현 주소지, 병역사항 기재) 1부.

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

⑧ 가족채용제한여부 확인서 1부.

※ ①, ②, ③, ④, ⑤, ⑦, ⑧ 는 접수처에 비치 또는 구로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

⑨ 최종학력증명서 1부(학사학위 이상 대상자만)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(경력증명서 제외)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여야 함.

※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⑩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.(원본)

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또는 별도의 유효기간 내의 원본제출 시만 인정

- 해당기관의 관인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기관 직인,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
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.

※ 상기순서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

<제출서류 공동사항>

- ▶ 원본 제출
 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인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 - 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 - ▶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),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* ①, ②모두 제출
- 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개 선택

7. 응시자 주의사항
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5일전까지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,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.
-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면접 합격자에 한해 정당 미가입 확인서(기 정당가입자는 탈퇴확인서)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.
-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('18.9.21.)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구로구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(☎02-860-2396)

8.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
- 이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-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 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- 반환 청구방법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붙임 서식)를 작성하여 우리 부서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면, 본인 확인 후 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(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부담)을 통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.
- ※ □방문주소 :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245 구로구청 신관 6층 공원녹지과(02-860-2396)
□전자우편 : kym65902@guro.go.kr
-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제2조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과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채용서류 일체를 관리·파기할 수 있습니다.

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붙임 : 1. 응시원서 등 양식 1부.

2.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1부. 끝.

※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(국세청 홈택스)

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:

-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 : **사실증명신청**(동그라미 1번) → 사실증명(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)

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:

- 민원증명 → 민원증명신청 : **소득금액증명**(동그라미 2번) → 근로자소득용 발급(발급기한 설정) →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
-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

민원증명

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**민원증명 서비스**입니다.

- 원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을 따릅니다.

민원증명 1

- 사실증명신청

민원증명 원본확인 (수요처 조회)

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

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

민원실 대기인원 조회

민원증명 이용시간 증명발급 상세안내 >

- 사업자등록증명,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
- 납세증명서,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:00 ~ 22:00
-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:00 ~ 24:00

민원증명 이용절차

- 01 홈택스 로그인
- 02 민원증명 신청진행
- 03 민원증명 처리결과
-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

민원증명신청

- 사업자등록증 재발급
- 사업자등록증명
- 휴업사실증명
- 폐업사실증명
- 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)
- 납부내역증명(납세사실증명)
- 소득금액증명
- 소득확인증명서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)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-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
- 표준재무제표증명
-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
-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원사업장 증명
- 모범납세자증명
- 국세납세증명 조회(정부관리기관용)
- 근로(자녀)장려금 수급사실 증명
-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
- 취업후학자금상환, 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